

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(제4조제5항 관련)

$$\text{설치납부금액} = \text{시설 부지 매입비} + \text{시설 설치비}$$

1.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\text{시설 부지 매입비} = \text{시설 부지 면적} \times \text{부지 매입단가}$$

가. 시설 부지 면적(㎡)

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다.

$$\text{시설 부지 면적(㎡)} = [1) + 2)] \times 100 \div \text{건폐율(\%)}$$

1) 폐기물처리시설 면적

시설용량	소요면적
50톤/일 미만	$73.2\text{㎡} \times \text{시설용량}$
50톤/일 이상 100톤/일 미만	$3,660\text{㎡} + 20\text{㎡} \times (\text{시설용량} - 50)$
100톤/일 이상 300톤/일 미만	$4,660\text{㎡} + 25\text{㎡} \times (\text{시설용량} - 100)$
300톤/일 이상 500톤/일 미만	$9,660\text{㎡} + 5\text{㎡} \times (\text{시설용량} - 300)$
500톤/일 이상	$11,000\text{㎡} + 5\text{㎡} \times (\text{시설용량} - 500)$

2) 주민편익시설 면적

시설 부지 면적의 20퍼센트

나. 부지 매입단가

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면적(㎡)당 조성원가. 다만, 설치납부금액 산정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면적당 단가를 적용한다.

2. 시설 설치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\text{시설 설치비} = \text{소각시설 설치비} + \text{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} + \text{주민 편익시설 설치비}$$

가. 소각시설 설치비

$$\text{소각시설 설치비} = 1) \div 2) \times 3) \times 4) \times 5) \times 6) \times 7)$$

- 1) 생활폐기물(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다)의 배출량(톤)
- 2)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
- 3)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
- 4)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1.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
- 5)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.2
- 6)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
- 7) 지상시설은 1, 지하시설은 1.4

나.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

$$\text{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} = 1) \div 2) \times 3) \times 4) \times 5) \times 6) \times 7)$$

- 1) 음식물류 폐기물(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)의 배출량
- 2)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
- 3)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
- 4)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1.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
- 5)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.2
- 6) 사료화 시설, 퇴비화 시설,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
- 7) 지상시설은 1, 지하시설은 1.4

다. 주민편익시설 설치비

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퍼센트